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82

발의연월일: 2020. 11. 5.

발 의 자:김민기·백혜련·이탄희

김승원 · 정춘숙 · 송옥주

김상희 · 조승래 · 설 훈

강선우 · 김병욱 · 이형석

이규민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, 주택건설사업 등 대도 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의 시·도지사가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최근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계획 중인 대규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광역교통에 큰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,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대상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시·도지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 및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, 일정 규모 이상의 공 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 도록 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의2제1항 중 "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을 "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(이하 "대규모 개발사업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
- 2.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
- 3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
- 4.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
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 진지구계획 등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의2(대규모 개발사업의 광	제7조의2(대규모 개발사업의 광
역교통 개선대책) ① <u>대도시권</u>	역교통 개선대책) ① <u>개발면적</u>
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	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
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	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
<u>으로 정하는 사업</u> 이 시행되는	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
지역의 시·도지사는 개발사업	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
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	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	는 사업(이하 "대규모 개발사
제출하여야 한다.	업"이라 한다)
<u> <신 설></u>	1.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
	<u>택지개발사업</u>
<u><신 설></u>	2.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
	사업 및 대지조성사업
<u> <신 설></u>	3. '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
	법」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
	대주택 건설사업
<u> <신 설></u>	4.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
	개발사업
<u> <신 설></u>	<u>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</u>
(2) ~ (6) (생 략)	<u>는 사업</u>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